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제14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5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제16조 해약환급금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연금전환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질병특약의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전환과 특약 유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이 특약의 적립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1 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여 매 1 년간 확정적용합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이 특약은 전환 당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전환일에 따라 연금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연금연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및 보험용어 해설

- **전환전계약** :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이 특약에서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연금지급개시일(전환일)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라.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마. 전환전계약: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X 10%=10 원
- 2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 10 원(1 년차 이자)) X 10%=11 원
-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 원+11 원=21 원

- 나.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연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연금지급개시일(전환일)로부터 일 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특약의 공시이율의 적용은 전환일로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하며, 확정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의 공시이율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전환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로 부리됩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 년 10 월 8 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 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회사는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제 1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12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일(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부가된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로 합니다.

제14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1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16 조 [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자의 위법계약 해지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 4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31 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 4 항을 말합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16 조 [해약환급금] 제 4 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존속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1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 4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연계약해당일이 속한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④ 제 15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1> 연금지급 기준표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 급 액
종신연금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 (단, 10 년, 20 년 보증지급 또는 100 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기간(10 년, 20 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이 도래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분할계산한 연금연액
상속연금형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연액(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지급)

- (주 1) 연금연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 (주 2)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전환일로부터 매 1 년간 확정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일로부터 경과기간 5 년미만은 연복리 1.00%, 경과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 년이상은 연복리 0.50%를 적용합니다.
- (주 3) 연금연액의 지급주기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1 개월, 3 개월 또는 6 개월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증기간(10 년, 20 년, 100 세)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기간까지 해당 연금연액을 매년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00 세 보증지급기간 종신연금형의 보증기간은 100 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입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기간(10 년, 20 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해당 연금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기간(10 년, 20 년, 100 세)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 지급기간(10 년, 20 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연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연액 (제 3 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 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 16 조 제 1 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연액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주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주 4)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 홈페이지(www.kb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